|  |  |  |
| --- | --- | --- |
| **상무부 전자상거래 시범기업** **창립규범(잠정)**2010년 10월 27일전자상거래 시범기업의 창립 업무를 공개, 공정, 공평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이 규범을 특별히 제정한다.1. 시범범위이미 시범유형 중의 하나를 개통한 전자상거래 플랫폼, 중국 경내에 등록 등기한 독립 법인기업(본부 기업과 소속 분공사는 중복 신고를 불허함).2. 시범유형(1)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 인터넷쇼핑 플랫폼인터넷, 이동통신네트워크 등 네트워크 루트를 통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의류, 가전제품, 실내장식, 도서 및 시청제품, 통신디지털제품, 컴퓨터 및 부품(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함) 등 상품의 소매업무나 철도, 도로, 민항, 배표, 관광 및 호텔 예약, 원격교육, 가정(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함) 등 서비스, 그리고 기업과 자영업주를 대상으로 상술한 업무를 경영하는 온라인영업망 개설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2) 기업 지간의 전문 거래를 위한 전문 전자상거래 플랫폼한 개 또는 한 개 이상의 업종을 대상으로 기업 지간의 농산품, 일용공업품 및 생산수단의 온라인 도매거래에 제품전시, 정보발포, 거래상담, 물류지원, 자금결제, 안전인증, 신용평가 및 수여 등 서비스(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함)를 위한 제3자 전문화 전자상거래 플랫폼.(3) 전통기업의 전자상거래 응용 플랫폼전통기업이 스스로 건설, 운영하는 데로부터 인터넷판매와 구매업무를 발전시켜 “온라인 시장”과 “오프라인 시장”의 구매와 판매가 서로 결합된 전자상거래 플랫폼(전통기업이란 실체 판매영업망이 있고 설립 시에 단지 실체 시장의 구매와 판매업에 종사하며, 당면하게 여전히 실체 시장 구매와 판매를 주요 업무로 하는 생산과 유통기업을 가리킴).3. 시범표준(1) 기업은 국가의 관련 법률, 법규, 규장의 규정을 준수하고 《전자상거래 모델규범（SB/T10518-2009）》와 《인터넷거래 서비스규범》（SB/T10519-2009） 등 업계표준에 부합되고 전자상거래 응용이 국내 동 업계에서 선진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으며, 보다 높은 유명도와 일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우리나라 전자상거래의 발전에 시범적 의의와 추진 가치가 있어야 한다.(2) 기업이 인터넷을 통해 행정허가와 관련한 상품과 서비스의 경영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수속을 하고 상응하는 경영 비준증서를 취득해야 하며, 아울러 그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경영 비준증서의 정보와 선명하고 분별하기 쉬운 사진이나 그 전자링크표지를 공개해야 경영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3) 기업이 독립적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개통한 지 2년 이상(전통기업의 전자상거래 응용 플랫폼인 경우에는 개통한지 1년 이상)이고 플랫폼 운영이 안정하고 믿음직하며, 이미 인터넷정보서비스 전신 증식업무경영허가증을 취득하였거나 또는 비경영성 인터넷정보서비스 등록을 통해 ICP증서 번호를 취득해야 한다.(4) 기업이 전문적인 전자상거래 응용 조직관리 기구를 설립하고 전자상거래 응용 발전계획을 제정하여 전문 인재대오를 확보하고 충족한 자금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건전한 관리, 기술 및 재무제도를 구비하고 완벽한 판매 전반의 서비스보장체계를 갖추어야 한다.(5) 기업의 생산경영상황이 양호하고 그 직전연도의 주영 업무수입과 이익 및 세금이 온당하게 증장하고 기업이 전자상거래를 응용한 구매액, 판매액이 동 업계에서 리드지위를 차지하며, 그 총 구매액, 판매액의 비중이 해마다 높아지고 경제수익이 뚜렷해야 한다.(6) 기업의 전자상거래 응용이 혁신적이고 특징이 있으며, 지속적 발전 능력이 강해야 한다. 기업이 적극적으로 모델혁신, 기술혁신, 경영혁신을 전개하고 경영상품, 경영방식, 서비스형식이 특징이 선명해야 하며, 기업이 경영하는 상품품목, 시장점유율, 고객의 규모가 성장성이 있어야 한다.(7) 기업의 전자상거래 응용 사회적 효과가 뚜렷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에 원가를 줄이고 효율을 높이고 수익을 개선하는 등의 촉진 작용을 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는데 유리하고 상하류 관련 기업의 협동적 발전을 이끌며, 취업과 창업 촉진에 유리하며, 사회공중의 편의, 안전한 소비욕망을 충족시켜야 한다.(8) 기업이 최근 3년 내에 그 어떠한 위법, 규정위반 행위 기록이 없어야 한다.(9)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 인터넷쇼핑 플랫폼 운영기업은 이밖에 아래의 요건을 동시에 갖추어야 한다.① 플랫폼 매출액이 1억 위안 이상(제3자 플랫폼인 경우 그 연간 거래액이 20억 위안 이상)② 기업 종업원 총수가 150명 이상, 그중 전자상거래 서비스, 기술에 종사하는 인원이 기업 종업원 총수에서 점하는 비율이 50% 이상③ 다단계판매, 사기, 금품 판매, 짝퉁 제작 및 판매, 불법 자금모집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상응하는 건전한 관리 예방 및 통제조치 확보(10) 기업지간의 거래를 위한 전문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기업은 이밖에 아래의 요건을 동시에 갖추어야 한다.① 플랫폼에 등록한 법인기업 회원이 3,000개 이상②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연간 서비스 수입이 2,000만 위안 이상③ 기업 종업원 총수가 100명 이상, 그중 전자상거래 서비스, 기술에 종사하는 인원이 기업 종업원 총수에서 점한 비율이 50% 이상④ 대량 상품의 표준화계약 거래, 불법 선물 및 증권거래 등의 위법 또는 규정위반 경영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상응하는 건전한 관리 및 예방 통제조치가 갖추어져야 한다.(11) 전통기업 전자상거래 응용 플랫폼 운영기업은 이밖에 아래의 요건을 동시에 갖추어야 한다.① 기업이 응용하는 자체 건설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연간 매출액이 1,000만 위안 이상이거나 구매액이 5,000만 위안 이상② 기업이 전자상거래 서비스, 기술에 종사하는 인원이 10명 이상③ 전자방식을 통해 주문, 지불 과정을 완료④ 다단계판매, 사기, 금품 판매, 짝퉁 제작 및 판매, 불법 자금모집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상응하는 건전한 관리 및 예방 통제조치 도입.4. 업무절차(1) 지역별 신고. 해당 기업은 자체의 상황에 비추어 신고표를 작성하는 동시에 기업 공상영업집조, 행정허가와 관련되는 상품과 서비스의 경영비준증서, 세무등기증 사본, 회계감사를 거친 회계연도보고서 및 기타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소재지 성급 상무주무부서에 제출한다. 성급 상무주무부서는 유관기관, 전문가를 조직하여 신고단위가 제출한 자료를 심사한 후 추천명단을 확정하며, 추천문건과 신고기업의 자료(1부 원본과 7부 사본)를 상무부에 보고한다.(2) 전문가 평가. 상무부는 업계의 전문가를 조직하여 시범 창립규범에 따라 기업의 신고자료를 평가하며, 필요시에는 관련 내용에 대한 현장 조사연구를 실시하여 평가의견을 제기하고 초보적인 시범기업명단을 작성한다. (3) 결과공시. 초보적으로 작성한 시범기업명단은 상무부 사이트에 공시하며, 어떠한 단위나 개인이든지 명단에 부동한 의견이 있는 경우 상무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4) 공문 발송 및 발표. 초보적으로 작성한 시범기업에 대하여 공시기간에 이의가 없거나 이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상무부는 그를 시범기업으로 확정하며 아울러 상무부 판공청의 공문 형식으로 시범기업명단을 공표한다.5. 동태적 관리(1) 전자상거래 시범기업은 경영상황 보고제도를 실시한다. 기업은 매년 2월말 전에 직전연도의 경영상황을 상무부와 소재지 성급 상무주무부서에 보고하여 동태적 평가 내용으로 한다.(2) 이미 확정한 전자상거래 시범기업이 명칭이나 경영범위를 변경하거나 합병, 분립, 업태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무부와 소재지 성급 상무주무부서에 보고하여 등록해야 한다.(3) 이미 확정한 전자상거래 시범기업이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범자격을 취소한다.① 신고서류 중에 거짓정보가 있는 경우② 은행채무, 세금을 체납하거나 고의로 임금지급을 지연하거나 짝퉁 및 저질제품을 판매하거나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등의 심각한 신용상실 행위가 있는 경우③ 위법, 규정위반 행위로 인해 법 집행부서로부터 처벌을 받은 경우④ 시범표준에 더 이상 부합되지 아니하는 기타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기업은 그 시범자격이 취소당한 후부터 2년 내에 전자상거래 시범기업을 다시 신청하지 못한다.이 규범은 상무부(商貿服務司)가 책임지고 해석한다. |  | **商务部电子商务示范企业创建****规范（试行）**2010年10月27日为保证电子商务示范企业创建工作的公开、公平、公正，特制定本规范。一、示范范围已开通示范类型之一的电子商务平台、在中国境内注册登记的独立法人企业（总部企业与所属分公司不得重复申报）。二、示范类型（一）面向消费者的专业网络购物平台通过互联网、移动通信网等网络渠道面向消费者从事服装、家电、家居装潢、图书音像、通讯数码、电脑及配件（包括但不限于）等商品零售业务或提供铁路、公路、民航、船舶客票、旅游及酒店预订、远程教育、家政（包括但不限于）等服务，以及面向企业和个人经营者提供经营上述业务网络店铺开设服务的电子商务平台。（二）面向企业间交易的专业电子商务平台面向一个或多个行业，为企业之间开展农产品、日用工业品和生产资料的网上批发交易提供产品展示、信息发布、交易磋商、物流支撑、资金结算、安全认证、征信授信等服务（包括但不限于）的第三方专业化电子商务平台。（三）传统企业电子商务应用平台由传统企业自主建设运营，发展网络销售和采购业务，实现“线上市场”与“线下市场”购销互动结合的电子商务平台（传统企业指具有实体销售网点，成立时只从事实体市场购销业务，且目前仍以实体市场购销业务为主的生产和流通企业）。三、示范标准1.企业遵守国家有关法律、法规、规章的规定，符合《电子商务模式规范（SB/T10518-2009）》和《网络交易服务规范》（SB/T10519-2009）等行业标准，电子商务应用在国内同行业中处于先进水平，具有较高知名度和一定影响力，对我国电子商务发展具有示范意义和推广价值。2.企业通过互联网从事涉及行政许可类商品和服务的经营，须按有关规定依法办理相关手续，取得相应经营批准证书，并在其电子商务平台公开经营批准证书的信息以及清晰可辨的照片或其电子链接标识方可开展经营活动。3.企业已开通独立电子商务平台2年以上（如为传统企业电子商务应用平台，开通1年以上），平台运行稳定可靠，已取得互联网信息服务增值电信业务经营许可证，或已通过非经营性互联网信息服务备案，取得ICP证号。4.企业建立专门的电子商务应用组织管理机构，制定电子商务应用发展规划，拥有专业的人才队伍，具备充足的资金保障，有健全的管理、技术和财务制度，拥有完善的售前、售中、售后服务保障体系。5.企业生产经营状况良好，上年度主营业务收入和利税稳定增长，企业应用电子商务的采购额、销售额在同行业中居领先地位，占其总采购额、销售额的比重逐年提高，经济效益明显。6.企业电子商务应用有创新、有特色，可持续发展能力较强。企业积极开展模式创新、技术创新、经营创新，经营商品有特色、经营方式有特色、服务形式有特色，企业经营的商品品种、市场占有率、用户规模富有成长性。7.企业电子商务应用的社会效益明显，对相关产业发展具有降低成本、提高效率、改善效益等促进作用，有助于提升相关产业的国际竞争力，带动上下游关联企业协同发展，有利于促进就业和创业，满足社会公众便利、安全的消费需求。8.企业在近3年内无任何违法、违规行为记录。9.面向消费者的专业网络购物平台运营企业还应同时具备以下条件：（1）平台年销售额在1亿元以上（如为第三方平台，年交易额在20亿元以上）；（2）企业职工总数150人以上，其中从事电子商务服务、技术人员占企业职工总数比例50％以上；（3）对于传销、欺诈、销售违禁品、制假售假、非法集资等违法违规行为有相应健全的管理防控措施。10.面向企业间交易的专业电子商务平台运营企业还应同时具备以下条件：（1）平台注册法人企业会员3000个以上；（2）电子商务相关的年服务收入2000万元以上；（3）企业职工总数100人以上，其中从事电子商务服务、技术人员占企业职工总数比例50％以上。（4）没有从事大宗商品标准化合同交易、非法期货及证券交易等违法违规经营活动，并有相应健全的管理防控措施。11.传统企业电子商务应用平台运营企业还应同时具备以下条件：（1）企业应用自建电子商务平台的年销售额在1000万元以上或年采购额在5000万元以上；（2）企业从事电子商务服务、技术人员在10人以上；（3）能够通过电子方式完成订购、支付过程。（4）对于传销、欺诈、销售违禁品、制假售假、非法集资等违法违规行为有相应健全的管理防控措施。四、工作程序1.各地申报。有关企业根据自身情况填写申报表，并附企业工商营业执照、涉及行政许可类商品和服务的经营批准证书、税务登记证复印件，经审计的会计年报及其他证明材料，报所在地省级商务主管部门；省级商务主管部门组织有关机构、专家对申报单位提交的资料进行初核后确定推荐名单，将推荐文件和申报企业材料（1份原件和7份复印件）报商务部。2.专家评估。商务部组织业内专家依据示范创建规范对申报企业资料进行评估，必要时对有关内容进行现场调研，提出评估意见，拟定示范企业名单。3.结果公示。将拟定的示范企业名单在商务部网站公示，任何单位或个人对名单有不同意见的，均可向商务部提出异议。4.发文公布。对拟定的示范企业在公示期间无异议或者异议不成立的，由商务部确定为示范企业，并以商务部办公厅文件形式公布示范企业名单。五、动态管理1.电子商务示范企业实行经营情况报告制度，每年2月底前企业将上年度经营情况上报商务部和所在地省级商务主管部门，作为动态评估内容。2.已确定的电子商务示范企业更名或变更经营范围、合并、分立、转业的，应及时向商务部和所在地省级商务主管部门备案。3.已确定的电子商务示范企业有下述情况之一，取消其示范资格：（1）在申报材料中存在虚假信息的；（2）有拖欠银行债务、欠税、恶意欠薪、销售假冒伪劣产品、侵害消费者合法权益等严重失信行为的；（3）因违法、违规行为，受到执法部门处罚的；（4）具有不再符合示范标准的其他情况的。企业被取消示范资格起2年内，不得再申报电子商务示范企业。本规范由商务部（商贸服务司）负责解释。 |